

2023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요일) 15:00 ~ 17:00

○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 회순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김종석, 백기태, 김사옥, 손정민, 주호중, 조화림, 황인섭, 박윤서, 배준수, 정우상, 최시영, 양수정, 이현욱, 박상민 위원

○ 불참자 : 이동현 위원

○ 상정안건

- 2023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
-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간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최경락)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2023 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일반직위원의 임기가 1년인 바, 위원장의 임기 또한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정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김종석 학생처장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백기태)

간사 : 학생처장님 추천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김종석 (최경락) 위원님을 오늘 재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간사 :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김종석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시 (최경락)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 회의 진행에 앞서 신규위원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신규위원)

임시위원장 :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김종석)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중 「2023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에 의거 재정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함에 일반직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상과대학 황인섭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조화립)

임시위원장 : 황인섭 위원님 추천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위원님들의 추천과 재청으로

(김종석) 황인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의 수락 인사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황인섭)

위원장 :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인섭)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2022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함.

(김태성)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명회계법인 회계사님께서 감사보고서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정명회계법인 : 재무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함.

(회계사)

위원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결산서 255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서와 감사보고서 17쪽 세입세출외보관
(박상민) 현금 세부내역 금액을 보시면 감사보고서의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이 우리 재정상태표
현금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이 부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 기타비유동부채로 쓰여 있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기가 어려워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명회계법인 : 세입세출외보관현금 세부내역에서 기타비유동부채 다음에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계사) 여기는 선수등록금, 선수금, 예수금, 그리고 미지급금 등이 합쳐져 있습니다.

위원 : 다음에는 주석으로 자세히 설명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매칭이
(박상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명회계법인 :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위원 : 제일 많이 차지하는 잡종금이 선수등록금인가요?

(박상민)

정명회계법인 : 네, 맞습니다.

(회계사)

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결산개요 4쪽 세입세출결산 요약에서 잉여금이 885억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정우상) 245억입니다. 아래 세입결산 부분에서 자체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148억, 2022년 169억으로 21억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불용액도 있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도 포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결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면밀히 살펴서 결정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김태성) 불용액이 덜 생기도록 예산 편성에 더 세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24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 주요사업비가 얼마고 경직성경비가 (배준수) 얼마인지 결산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앞서 정우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과도하게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직성경비의 경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 245억에 대해서 결산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용도가 정해져있는 국고 (김태성) 시설비 등은 결산 시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고시설비 65억과 수입대체경비 등 8.5억을 제외하고 남은 172억이 경상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고, 그 중 30억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해서 최종재원은 142억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에 35억, 기타 목적사업비 2억 등 37억을 사무국 필수경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05억은 주요사업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처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 배준수 위원님의 질의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결산서 어딘가에 들어있어서 경직성 (백기태) 경비가 어디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확히 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결산서 어딘가에는 작성되어서 재정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 다음 결산을 진행할 때는 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 나아가서 경직성으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배준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5억 중 105억이 남았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140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애초에 필요한 금액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말씀하신 140억은 국고시설비 등 목적지정사업(73억)과 본예산에 기편성한 금액 (김태성) (30억), 공공요금 등 사무국 1차 추정재원(37억)으로 사용됩니다.

위원 : 사전설명회 때 설명을 듣고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양수정) 요청 드려서 받았습니다. 우선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49.8억이고 국고 125억, 자체 137.3억입니다. 그 중 본예산이 20억 편성되었고 추경으로 117.3억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45.9억원이고 국고 65억, 자체 180.9억입니다. 그 중 본예산이 30억 편성되었고 추경으로 150.9억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추경재원으로 약 33억이 증가되었는데 추경 때 어떤 기준과 과정으로 이 재원이 배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현재 추경 내용을 기획처로 보냈고 기획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김태성) 각 부서와 단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보완해서 설명 드립니다. 저도 기획처에 오기 전, 매년 추경을 통해 반영되는 예산이 있는데 (백기태)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대학회계로 집행하다 남아서 이월되는 금액인데 그것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을 통해 반영됐던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 105억에 대한 추경편성에 있어 각 부서별로 판단을 다 진행했습니다. 과한 경우 잘라내고 또 디테일한 산출근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시설개선 경우 기획처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 맞는지 확인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위원장 : 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위원 : 결산서 167쪽을 보시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전년도 53억, 올해 69억으로 16억 증가했습니다. (정우상) 올해 예산서 상에는 6억 정도만 세워져 있던데 혹시 적립을 따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정부분만 퇴직금 예산으로 세워놓고 부족하면 추경을 (김태성) 통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정명회계법인 : 보통 일반기업의 경우 세무혜택 때문이라도 적립을 하는 편입니다. DB형 같은 (회계사) 경우 운용주체가 대학교입니다. 그렇다보니 전북대는 자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군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적립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신바와 같이 향후 예산 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연해드립니다.

위원장 : 심도 있는 질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황인섭)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다음으로
(황인섭) 반대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부처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함.
(최경숙)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학생지도활동에서 학생의 서명을 첨부해서 업로드 하도록 되어있는데 굳이 또 사진을
(주호중) 찍을 필요가 있나요?

성과관리부처장 : 사진으로만 증빙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확인서로도 증빙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최경숙) 사진과 확인서 둘 다 가능합니다.

위원 : 추진경과보고 부분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제출받아 기획처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고
(최시영)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각 의견을 제출한 기관에 피드백
되었는지요?

성과관리부처장 : 자체검토 한 내용들을 다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협에서 많은 사항을
(최경숙) 요청하셨습니다. 대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리를 마련했고 수용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의결을 마쳤는데 연구처에서 교수님들
논문게재경비와 관련하여 추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의결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황인섭)

위원 : 본 안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교연비 지급기준안 세부 내용 중 논문게재경비와 관련하여
(백기태) 총액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단가 부분을 변경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3안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에
(황인섭) 포함해서 심의·의결해도 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럼 만장일치로 본 안건에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진흥부처장: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지급기준안」에 대하여 설명함.
(김희선)

위원 : 요약해서 설명 드리자면 논문 한편 당 단가는 조금 더 올리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백기태) 받던 것을 2천만 원까지로 변경해서 여러 교수님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 범위는 변화가 없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저는 논문을 많이 내는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현욱) 학교에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교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전북대가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밀고 있고 실적이 높은 교수들의 네임파워가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과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연구진흥부처장: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우려스러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희선) 현재 재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는 합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 추가로 현재 논문게재경비를 3천만 원 이상 받고 계신 분들이 논문게재경비를 줄인다고 해서
(백기태) 논문을 안 쓰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사기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학교의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당 단가를 높여서 여러 교수님들이 자꾸 논문을 쓰셔야 전북대 전체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거점국립대 중에서 상한선이 3천만 원인 곳이 우리 학교가 거의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2천만 원 미만의 상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 여러 교수님들이 높은 단가로 유입이 되어서 논문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인 것
(박상민) 같은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오로지 예산 절감에만 너무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다른 방안으로 교수님 사기를 진작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지원금 말고 어떤 걸로 진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위원 :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3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상한을 2천만 원으로
(백기태) 낮춘다고 해서 제가 논문을 적게 쓰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을 받는 분들은 이미 논문을 10편 이상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한이 낮아진다고 해서 논문을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 그것은 위원님의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민)

위원 : 저는 대학원생 대표로 나와 있는데 사실 논문이 교수 역량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이현욱) 연구하는 연구생과 대학원생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많이 쓰시는 교수님 예산이 줄어들면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가는 일정부분의 예산도 영향이 있지 않은지, 아까 사기 진작을 말씀하셨는데 대학원생들 되게 가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금 말고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위원 : 우선 교수님들이 받는 예산이 대학원생들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는 조사를 해 볼
(백기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BK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논문 인센티브를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재원이 있다면 보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원생들 사기 진작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많이 쓰시는 교수님들이 지원금 때문에 논문을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논문을 많이 쓰시는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분들도 지원금 때문에 논문을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논문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이미 연구과제가 많다는 것이고 연구실적을 맞추기 위해 논문을 반드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 저도 대학원생 위원과 같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경비를 받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중석) 대학원생 사기진작, 학교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 교수님한테 주어지는 지원금이 거의 없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 논문게재경비는 우리학교의 많은 교수님,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박윤서) 오늘 지급기준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대로 확정이 될 텐데 교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 자연계열의 논문게재경비 추가 예상액을 1억 2천정도, 인문사회계열은 2천 4백 정도로 예상 하셨는데요.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형평성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이 SSCI 논문을 쓰기가 쉽지 않고 주로 국내 연구재단 등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학교에서도 국내 연구재단 등재 논문에 대해서 자연계열은 지급하지 않고 인문사회계열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계열 교수님들만 인상 효과를 많이 보게 되어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 변경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를 하면 확정이 되어버리니 조금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진흥부처장: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문사회계열 SSCI

(김희선)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축적됐던 부분도 있고 이번 연도는 가지고 있는 재원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교연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외에 KCI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 이 기준으로 하면 자연계열 교수님들은 SSCI를 쓰고 게재료를 받으니 혜택이 많겠지만
(박윤서)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은 SSCI를 쓰는 분들이 많지 않고 국내 논문을 쓰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료를 보니 연구기반 조성비는 인문사회계열이 더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놓고 형평성을 잘 살피지 않으면, 게다가 교내 의견수렴까지 거치지 않는다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 결산자료를 보니까 교연비 관련이 224억이나 되네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개인적으로
(김사육) 건의를 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교연비와 관련해서 여태껏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2~5배 환수 등과 같은 제도나 법률이 있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중간점검 등을 검토해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 논문 영역은 표절검사를 돌려서 결과 보고서를 내고 있고 학생지도 영역에 대해서는
(백기태) 상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상시점검 시스템을 2022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통해서 보완, 수정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 현재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논문 편수 자체가 580편, 48편으로 거의 10배 정도
(배준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증가액은 1억 2천과 2천 4백으로 5배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문 편수에 비하면 증가가 덜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에는 SCI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인문사회계열은 KCI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 지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교수님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 방향이 맞지 않을까... 대다수의 교수님 입장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 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위원 : 현재 대학회계직 직원 중 거의 70%가 학생지도 비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시영)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자체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학생지도 비용을 받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고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 있는데 (백기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연비 총액을 증가시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분들이 모두 교연비를 받게 됐을 때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직군은 배제하고 어떤 직군은 포함하지를 못해서 현재는 기준이 되는 입사일을 정해서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만 교연비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사실 총액을 올려야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 타 국립대학의 경우 정원이 증가했을 때 추가된 정원만큼 교육부에 교연비 증액을 (최시영)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네, 맞습니다. 적용을 못 받으시는 대학회계직원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백기태) 많아서 교육부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직군을 나눠서 협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직군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이렇지도 저리지도 못하는게 솔직한 상황입니다.

위원 :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천 4백만 원을 지급받는데 만약 고의든 (배준수) 실수든 발각되어 환수를 한다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걸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느 부처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교육부 지침에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을 꼭 지켜야하는지, 지켜야한다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 : 일단 계산법을 말씀 드리면 3천 4백 더하기 3천 4백 곱하기 2해서 1억 2천이 됩니다. (김사육) 공공재정환수법에는 2⁵배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부실하면 조사나 감사를 거쳐 최종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배준수)

위원 : 2⁵배인데 저희는 최소인 2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술지에 (백기태)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으로 판정되어서 게재가 철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저는 교수회 추천으로 왔기 때문에 교수회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완화 또는 (배준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 제가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비가 집행되고 결과를 (김중석) 못 냈을 경우 성실실패라는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 그 자체보다는 결과를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과제계획을 실시했을 때도 이러하데 현재 교연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립 대학 교수들은 월급자체가 연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치 국가 연구비를 잘못 사용해서 패널티를 받는 식으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희생 절차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직원과 교수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은 세상에
(황인섭)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변경안을 포함하여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황인섭) 다음으로 반대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찬성 10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 추가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연비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인데
(양수정) 여기계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교수님과
상담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했더라도 교수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일지를 한 번에 쓰시다 보니 깜빡하시고 안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담을 했음에도 패스처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를 성적확인 하는 도중에야
비로소 발견하다 보니 해결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성적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상담일지를 쓰시면 '교수님이 상담결과를 입력했습니다.' 라는 메일이
자동으로 오도록 시스템화가 가능한지 말씀드렸었고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 :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교연비 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논의가
(백기태) 되었습니다. 상담내용이 메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오아시스에 입력을
하시면 바로 해당 학생에게 '상담이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메일이 발송되는 시스템
입니다. 정보전산원에 확인한 결과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교연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위원 : 추진경과를 보면 4월 17일에 교연비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진행했고 오늘
(박윤서) 재정위원회에서 안이 변경 되었는데 그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 재정위원회가 의결 기구라서 재정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백기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 네,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섭)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대학회계직원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남윤희)

위원장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섭)

위원 : 혹시 공무원 정원 15명 감축이 우리대학 15명 감축인가요? 아니면 국립대학 전체 (백기태) 15명 감축인가요?

인사팀장 : 우리대학 15명 감축입니다.

(남윤희)

위원 : 15명 감축인데 3명 증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박상민)

인사팀장 : 15명 감축이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향후 정년퇴직, 자연감소 등을 예상해서 (남윤희) 15명으로 계획해놓은 상황입니다. 무조건적 충원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해 3명으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 결산개요 책자를 보면 직원현황에서 대학회계직 정원이 3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민)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에서는 357명으로 말씀하셔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에서 보면 정원대비 10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사팀장 : 제가 보기에 결산개요는 2022년도 4월 1일자 통계연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윤희) 말씀드리는 인원은 현재 시점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신설조직이 생기면서 충원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 작년에 50명이 증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 4월 1일자로 정원이 303명, 보고하신 (손정민) 내용으로는 357명이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 물론 퇴사 등의 이유로 가감어 있을 수 있으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확인이 (김사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관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조직개편으로 신설조직이 생기다 보니 인력 충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초 5명으로 생각했는데 부서 간 조정을 통해 3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감축을 해서 신설부서로 보낼 계획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의해주셔서 통과가 되면 향후 조직개편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 2022년 4월 1일자 통계연보 기준이라고 하면 작년 데이터가 아니고 2021년 데이터이고 (주호종) 2년 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 : 혹시 추가 인력 채용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시영)

인사팀장 : 이를 위해 재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이고 대학회계직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알고 (남윤희) 있긴 하지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 전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공무원이 5년간 15명 감축되는 상황이고 3명의 인건비는 (김태성)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리학교가 대학회계 직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배준수) 놀랐는데 대학회계 직원이 300명 정도라는 것이 우리학교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연감소로 해서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본부 조직이 너무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줄여나가야 정답이라고 보는데 지금 안건은 오히려 늘린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목적을 뒤야지 힘들다고 해서 계속 늘려간다면 정년까지 생각했을 때 학교에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 인원 증가 부분은 확인해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원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김사옥)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공무원 정원을 확보해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공무원 정원 확보와 관련하여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정원이 거의 동결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국가공무원 15명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대학회계직 3명 증원을 재정 악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 대학회계직을 늘린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올바른 판단이 아니지 않느냐는
(배준수) 생각입니다. 대학회계 직원 비용이 차지하는 만큼 학교에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 우리 대학회계 지출 중 도서관 관련 지출비가 타 대학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도서관
(김중석) 전자저널 비용은 거의 고정적인데 그야말로 유동적인 국립대육성사업비로 대부분 집행된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교수들도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돈이 안 나가게 되면 교수님들이 논문을 써도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공무원노동조합 측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인섭)

위원 : 대학회계 직원을 증원하면 인건비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업무에 있어서
(정우상) 공무원이 줄면 대학회계직 선생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정원을 15명 감축한다고 하니 이 정도는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360명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현재 연봉제 183명은 정원과 현원이 동일합니까?

인사팀장 : 네, 정원과 현원이 동일합니다.
(남윤희)

위원 : 참고로 2년 동안 50명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자료의 표를 보시면 기간제 계약직 (최시영)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을 대체하여 잠깐 근무하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50명 인원이 신규 채용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 네,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충분히 상황 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황인섭) 나온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다음으로 반대 (황인섭)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행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따라 출석 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대표로 간(間)서명 할 수 있습니다. 간서명 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참고로 2022회계연도 재정위원회 간서명은 입학처장님이심 주상현 위원님, 공무원 (최경락) 노조 김용우 위원님, 총학생회 양수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 네, 종전대로 본부 측 1명, 노조 측 1명, 학생 측 1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실까요? (황인섭) 본부는 학생처장님께서 간서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 동의합니다.

(전체)

위원장 : 이에 김종석, 정우상, 양수정 위원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황인섭)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락)

작성일 : 2023. 5. 4.(목)

위원장 : 황인섭 (인)
간사 : 최경락
기록자 : 부찬미 (부찬미)